



2009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시간당 3,200원(4,000원의 80%)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시(監視)적 근로자**”는 비교적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은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을 말합니다.

“**단속(斷續)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근로시간 보다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기사, 전용 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 2011년까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그해 최저임금의 20%가 감액 적용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 얼마나 추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파트 경비원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적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추가 부담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형태를 1일 2교대로 전환하면 근로자의 건강도 보호하고 추가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별 최저임금 산정 내역

(단위 : 시간, 원)

근로형태		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3시간 부여 기준			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 부여 기준		
		격일제(Ⅰ형)	1일 2교대제(Ⅱ형)		격일제(Ⅲ형)	1일 2교대제(Ⅳ형)	
근무시간대		7시~익일7시	7시~19시	19시~익일 7시	7시~익일 7시	7시~19시	19시~익일 7시
휴게시간(-)	점심	1	1	-	1	1	-
	저녁	1	-	1	1	-	1
야간휴게시간(-)		3	-	3	4	-	4
실근로시간		19	11	8	18	11	7
야간근무가산시간(+)		2.5	-	2.5	2	-	2
임금지급기준시간(A)		21.5	11	10.5	20	11	9
일 임금액(B)		68,800	35,200	33,600	64,000	35,200	28,800
월 임금액(C)		1,046,340 (B×365/2/12)	1,070,670 (B×365/12)	1,013,600 (B×365/12)	973,340 (B×365/2/12)	1,070,670 (B×365/12)	876,000 (B×365/12)

※ 일 임금액(B)=임금지급기준시간(A) × 감시 · 단속적근로자최저임금(20%감액)시급 3,200원

아파트 경비원을 위의 근로형태로 근로하게 하면서 산출된 월 임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 예시 이외에도 귀 아파트 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임금체계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인원을 줄여야 할까요?

경비원은 감시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택배 · 우편물 수령, 어린이 보호, 주차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경비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경비원은 필요하므로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조정 · 관리를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시키면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시간급 3,200원)이 적용된다고 하여 고령자가 일터를 잃는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채용시 각종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 55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때에는 업종별 지원기준을 초과 **고령자수 1인당 분기 18만원을 5년간 지원**(근로자수 10~15% 범위)
-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등에 등록된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지원**(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15만원)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 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 **교대제전환지원금**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실시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간 지원**
- ▶ **정년연장장려금**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 정년연장된 기간의 1/2기간동안 최대 5년까지 **월 30만원 지원**

고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